

## II. 보험제도 변화

### 1. 제도변화의 기본방향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제적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의 강화 경향 등으로 향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도 및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하는 금융규제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등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이지만, 투자자권유 규제의 도입 등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는 2008년 11월 3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판매제도의 선진화 도모, 겸영업무의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국제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리스크감독정책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의 수렴,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의 일관성 확립 등의 흐름 속에서 전사적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방향은 보험산업의 겸
- 
- 8)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은 오영수(2007),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보험개발원 CR 2007-4 참조
- 9) 보험업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2008),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참조

업화 및 종합화 진전, 판매채널의 다양화,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보험회사는 다양한 겸영업무의 허용, 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으로 겸업화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세계적인 추세인 보험산업의 제관분리에 부응하고, 보험판매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판매채널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음.
-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은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임.
- 또한 민원, 분쟁 등 소비자 관련 금융시장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장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2. 제도변화 방향의 주요내용

### 가. 보험산업의 겸업화·종합화

- 보험회사들은 겸업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보하여 타업권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세계적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추세에서 국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면서 종합금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
  - 더욱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시장의 포화상태 도달로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인소득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겸영허용, 지급결제 허용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임.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면서 단지,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차단벽(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추어 개별 보험회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업무가 허용됨.
- 또한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대상이 광범위해질 것임.
  -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가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파생상품도 총액한도는 축소되나 유형의 구분 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소유도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임.
- 더욱이 금융겸업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지주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나, 생손보간 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계 등 손자회사 형태의 지배는 금지되며,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고, 별도 규정은 배제됨.

## 나. 판매채널의 다양화

- 2000년 이후 보험판매제도는 온라인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설계

사 교차모집제도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옴.

- 보험산업에 있어서 여러 판매채널의 도입은 제판분리의 추세에 대응하면서, 기존 판매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 전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됨.
- 향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판매채널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신설, 법인대리점제도 및 기타판매채널 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함)로 정의되는데,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 형태임.
  -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도 허용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됨.
  -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이 부여되고,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금감원에 예탁하도록 함.
  -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중개사제도와 대리점제도를 결합한 성격이 강하나 기능면에서는 중개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보험중개사보다 권한은 더 커지나, 기능 및 역할이 상당 부분 기존 모집조직과 중첩되어 모집조직간 갈등과 혼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표 II-1> 보험모집조직간 권한 비교

구 분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사
요율협상권	○	×	×	×	○
보험료수령권	×	×	○	○	×
계약체결대리권	×	×	△*	△*	×
고지의무수령권	×	×	○	○	×
보험금지급대행	소액에 한정	×	×	×	사전계약으로 소액에 한정
배상책임소재	보험판매 전문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행위의 목적	계약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계약자
보험사와의 관계	독립	종속	종속	독립	독립

주 : \*는 보험업법상에서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음.  
 자료 : 오영수(2008), 보험제도 선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한편,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안전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보증금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기타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임.
  - 즉,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며,

- 보험회사·법인대리점·보험판매 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 보험대리점에 소속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 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권의 신BIS협약 적용, 보험권의 Solvency II 추진 등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임<sup>10)</sup>.
  - 신BIS 규제는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및 자본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저자기자본규제, 감독기능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3개축(pillar)의 리스크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신BIS는 금융권간·국가간 규제제도의 수렴 경향, 리스크관리 및 규제절차의 일관성 확립 경향 속에서 국제적 범금융권 제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EU Solvency II는 자기자본규제의 글로벌화와 리스크의 통합화 측면에서 신바젤협약(New Basel Capital Accord)의 “3 pillar method”를 보험권에 도입하는 것임.
-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RBS: Risk Based Supervision)는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노출된 리스크 및 이의 통제능력을 체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배분하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감독방식임.

---

1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류건식(2008), “보험회사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 「손해보험」, 2008.12. 대한손해보험협회를 참조

-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량화하여 감독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RBS는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위해 리스크기준 자본금(RBC: Risk Based Capital)을 첫 번째 축으로 구축함.
- 리스크중심의 경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중심 평가제도(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두 번째 축으로,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공시제도를 세 번째 축으로 설계하고 있음.

<표 II -2>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

신BIS 규제(Pillar 별)	리스크 감독체계 구조	리스크 감독체계 목적
[Pillar I] 최저자기자본 규제	RBC제도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
[Pillar II] 리스크중심 경영관리 유도	RAAS	
[Pillar III] 시장규율 강화	리스크공시	

-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정책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리스크에 의한 손실의 현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조치하는 예방적, 선제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U Solvency II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RBC제도가 2009년 4월부터 도입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RAAS와 RBC추가자본의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리스크공시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표 II -3>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의 도입관련 로드맵

년도	제도 도입 및 운영	로드맵 주요 내용
2009	<input type="checkbox"/> RBC제도 도입	표준모형에 의한 RBC비율 산출 및 연착륙 유도 내부모형의 승인제도를 위한 감독 기본요건 및 보험회사 준비사항 제시
2010	<input type="checkbox"/> RBC제도 본격운영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방법 도입 RAAS와 RBC 추가자본 연계
2011	<input type="checkbox"/> 국제회계기준 도입 <input type="checkbox"/> 리스크공시제도 도입	내부모형의 승인제도 시행(금리 및 보험리스크)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RBC기준 일부 수정 자본 및 리스크 규모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정보 공시

### 라. 소비자 보호의 강화

-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판매채널의 복합화,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조되는 추세임.
  - 보험산업의 겸업화·종합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의 선진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비자 관련 보험시장의 질서 선진화는 보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보호 차등화, 상품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보험상품 판매권유시 소비자 소득,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를 전문소비자(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일반소비자에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보다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판매를 권유할 때에는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시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확인하도록 규정함.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또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초래되는 보험사기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 확인 요청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며,
  -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

<표 II -4> 보험산업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

구 분	주요 내용
<p>종합화·겸업화의 진전</p>	<p><input type="checkbox"/>업무영역의 확대                      • 투자자문업·일임업 겸업 허용, 지급결제 허용, 부수업무 허용범위의 네가티브 방식 도입</p> <p><input type="checkbox"/>자산운용 대상의 확대                      •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지주회사 허용</p>
<p>판매채널 다양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 업무범위 확대, 배상책임 도입, 영업보증 개선</p> <p><input type="checkbox"/>법인대리점 제도 정비                      • 등록제도와 체제조치 개선, 공시·보고의무 신설</p> <p><input type="checkbox"/>판매채널 자격 및 책임 강화                      • 삼진아웃제, 설계사 교육의무, 모집사용인과 보험설계사의 통합</p>
<p>건전성·리스크 중심 감독</p>	<p><input type="checkbox"/>RBC 도입 등 Solvency II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강화</p> <p><input type="checkbox"/>파생상품, 금융기관 차입투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p>
<p>소비자보호 강화</p>	<p><input type="checkbox"/>소비자보호 관련 장치의 강화                      • 적합성 원칙 도입, 일반소비자 보호 차등화, 상품 설명 의무 강화</p> <p><input type="checkbox"/>보험사기 조사 강화                      • 보험사기의 정의 및 사실확인 요청권한 신설</p>
<p>기타</p>	<p><input type="checkbox"/>상품 확인 및 보험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p> <p><input type="checkbox"/>사업비 후취제도</p> <p><input type="checkbox"/>현금흐름방식의 도입</p>